

감염병 관리규정

제정 2020.08.12., 개정 2022.02.18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해전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교육 및 연구 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 이 규정은 대학, 행정부서, 학과, 부속기관 등에 종사하는 교직원, 학생, 조교 및 그 밖의 이용자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감염병이란 사람에게 침입한 특정 병원체(바이러스, 세균, 곰팡이 등) 혹은 병원체가 생산하는 독성 물질(독소)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을 말한다.
- ② 감염병 (의심)환자란 의료기관의 진료 결과 감염병 확진을 받았거나 감염병 의사환자(擬似患者)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.
- ③ 유행이란 한 지역사회나 집단에 감염병이 평소에 나타나던 수준 이상으로 많이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.
- ④ 방역물품이란 감염병 (의심)환자 발생 시 발열감시, 전과차단 조치, 격리 및 평상시 손씻기 실천, 학교 소독 등에 필요한 장비, 물품을 의미한다.

제4조(감염병 관리 조직의 구성) ① 총장은 대학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감염병 관리 대책본부를 구성하여야 한다.

- ② 감염병 관리 대책본부는 발생감시, 예방관리, 학사관리 및 행정지원관리의 4팀으로 구성한다.
- ③ 발생감시팀은 감염병관리자와 모니터링 요원으로 나누어 대학 내 감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, 발생정보취합 및 신고업무 등을 담당하며, 학과(계열)장, 학생팀, 학술정보원, 학생생활관, 교원, 조교, 학생 대의원회로 구성한다. <개정 2022.02.18.>
- ④ 예방관리팀은 감염병예방 및 관리 계획을 수립, 예방교육 및 홍보자료제작, 예방접종실시업무 등을 담당하며, 대외협력팀, 취창업지원팀, 산학협력지원팀, 입학팀, 양호실담당, 총학생회, 해전방송국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2.02.18.>
- ⑤ 학사관리팀은 감염병으로 인한 학사의 공백 발생을 최소화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사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며, 교무팀, 현장실습지원팀, 교수학습개발팀, IT지원팀, 국제교육원, 평생교육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2.02.18.>
- ⑥ 행정지원관리는 감염병으로 인한 각종 업무에 대한 행정지원을 담당하며, 총무

팀, 기획팀, 회계팀, 산학협력단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2.02.18.>

제5조(감염병대책본부장) ① 학교 내 감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 및 신고체계 구축과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총괄 지휘를 담당하기 위해 감염병 대책본부장을 지정한다.

② 감염병 대책본부장은 입학학생처장이 된다. <개정 2022.02.18.>

③ 감염병 대책본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학 내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총괄 지휘 담당: 사고지휘관 역할
2. 감염병 발생 감시 및 신고체계의 구축
3. 감염병 관리 조직의 구성 및 관리

제6조(감염병 관리자) ① 대학 내 감염병 발생 감시의 실무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감염병 관리자를 지정한다.

② 감염병관리자는 학생팀장, 학생생활관팀장, 학과(계열)장, 교직원, 조교로 구성된다. <개정 2022.02.18.>

③ 감염병 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담당 기구 내 감염병 발생 감시
2. 감염병 발생 정보의 취합 및 보고
3. 그 밖에 필요한 활동 등

제7조(모니터링요원) ① 학교 전체의 감염병 (의심)환자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감염병 발생을 감시하는 모니터링요원을 지정한다.

② 모니터링요원은 각 학과 교수(학과장제외), 조교, 학생 대의원회 등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2.02.18.>

③ 모니터링요원은 일상적인 학교생활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(의심)환자로 진단을 받은 학생이나 교직원을 발견하는 경우 감염병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예방조치) 감염병 대책본부장은 대학 내 예방접종 확대를 통해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.

- ① 생활관에 입소하는 모든 학생들의 B형간염, 결핵 등의 보균 여부를 확인한다.
- ② 보건의료 전공 계열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실시하기 이전 A형간염, B형간염, 수두, 파상풍, 독감과 MMR 접종 등을 실시할 것을 권장하여야 한다.
- ③ 해외 전입 학생(한국어 어학원생 포함)들의 국가필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제9조(방역)

① 감염병 대책본부장은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감염병 (의심)환자 발생 또는 유행 시 임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부 칙(2020.08.12.)

이 규정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2.18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